예산총칙

제1조: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	회	계	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	계			555,591,601	16,667,748
1.		일	반	회	계	545,465,843	16,363,975
2.		특	별	회	계	10,125,758	303,773
	이	豆	급 (여 기	금	1,151,996	34,560
	주		차		장	7,514,435	225,433
	주	거 흰	: 경기	내 선 시	나 업	440,195	13,206
	발	전 소 주	는 변 지	역 지 원	사 업	249,827	7,495
	지	하	수	관	리	769,305	23,079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900,000천원이다.

제6조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581,024천원으로 한다.

제7조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
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